

김천시 보훈수당 시행지침

- ☐ 참전명예수당(도비 · 시비)
- ☐ 보훈예우수당(도비 · 시비)
- 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- ☐ 사망위로금



복지정책과

김천시 보훈수당 시행지침

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합당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1 관련법규

- 국가보훈기본법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
-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2 사업개요

구 분	지급방법	지급금액(원)		비 고
		도비	시비	
참 전 명 예 수 당	매월	100,000	200,000	▪ 6·25, 월남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족: 도비 ▪ 6·25, 월남참전유공자: 시비
보 훈 예 우 수 당	매월	0	150,000	▪ 국가보훈대상자 (‘26년 금액 인상)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	매월	0	130,000	▪ 사망한 6·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(‘26년 금액 인상)
참 전 유 공 자 국 가 보 훈 대 상 자 사 망 위 로 금	사망 시 1회	0	400,000	▪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※ 참전유공자(6·25, 월남전) : 참전명예수당(도비) + 참전명예수당(시비)

※ 전몰군경유족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: 참전명예수당(도비) + 보훈예우수당

■ 참전명예수당(도비)

■ 6.25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중
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
- 참전유공자 : 참전명예수당(시비) 병급 지급
- **전몰군경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: 보훈예우수당 병급 지급**

※ 현재 김천시 내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없음.

변동 시 추후 별도 통보 예정.

■ 참전명예수당(시비)

■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
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6·25전쟁"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2. "**참전유공자**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- 가. **6·25전쟁**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**월남 전쟁**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■ 지원 제외자

-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
- 「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

구분	참전명예수당		보훈예우수당 (시/15만원)
	도(10만원)	시(20만원)	
참전유공자(6.25 및 월남전)	○	○	×
전몰군경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	○	×	○

■ 보훈예우수당(시비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
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의2(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(이하 "수당 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
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**순국선열**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2. **애국지사**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3. **전몰군경(戰歿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4. **전상군경(戰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
5. **순직군경(殉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6. **공상군경(公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7. **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**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8. **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**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
 -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9. **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**(이하 "재일학도의용군인"이라 한다)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한 사람은 제외한다)
10. **참전유공자**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-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11. **4·19혁명사망자**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12. **4·19혁명부상자**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13. **4·19혁명공로자**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을 받은 사람
14. **순직공무원**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15. **공상공무원**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16. **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**(이하 "특별공로순직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17. **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**(이하 "특별공로상이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18. **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**(이하 "특별공로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.

1. **재해사망군경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2. **재해부상군경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3. **재해사망공무원**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4. **재해부상공무원**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하 "5·18민주유공자"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**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**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·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
2. **5·18민주화운동부상자**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(이하 "장애등급"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3. **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**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3조(적용 대상자) 이 법은 **고엽제후유증환자**·**고엽제후유의증환자** 및 **고엽제후유증 2세환자**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·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3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**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**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(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)
2. **특수임무부상자**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3. **특수임무공로자**: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

■ 지원 제외자

-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
- 「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
 - ※ 예외 : 전몰군경유족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참전명예수당(도비)과 보훈예우수당 병급 지급
- “지원대상자” ※ 예시) 지원공상군경
 - ※ 자세한 사항은 본문 붙임1) 국가보훈수당 지급제외자 참조

■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
-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함

■ 보훈예우수당(도비)

■ 「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4.19유공자, 5.18유공자 **본인**

- 자격조건 : ① 65세이상 ② 참전명예수당(도비)을 받지 아니한 자
- 지급기준 : 월 5만원/인

※ ‘25년 도 신규사업으로 지급 시작.

‘26년 1월 현재 기준 김천시 내 대상자 2명(사업개요 미포함)

매월 보훈청 통보 명단 정리하여 지급 대상자 여부 파악 중으로 대상자 변동 시 추후 별도 통보 예정.

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■ 사망한 참전유공자(6·25, 월남전)의 배우자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
■ 지원 **제외자**

- 「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

■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
- 전상군경 등의 **추가적인 자격이 없는** 참전유공자 **단일자격인** 자가 사망한 경우,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- 전상군경 등의 **추가적인 자격이 있는** 자가 사망한 경우, 보훈청에서 승계가 되기 전까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가능(승계 후 보훈예우수당 신청 필수)

구분	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	보훈예우수당
원 수급자 자격	참전유공자	국가유공자
사망 시 수급자	배우자	유족
보훈자격 유무	X	O
특이사항	참전유공자격은 승계되지 않음	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됨

■ 사망위로금

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
- 신청기간 : **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**

• 지급대상

- 지급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함 (1순위 : 배우자, 2순위 : 자녀, 3순위 : 부모)
-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신청 시, 자녀 간 합의 후 1인 신청 안내

•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

- **접수 전 반드시 사망자 보훈자격 및 사망일자 확인**
- **참전유공자 단일자격** 보유 시, 유공자 본인 사망 후 보훈청 유족 **승계불가**(새올행정시스템 - 맞춤형서비스 - '보훈' 에서 자격 확인 가능)

※ 전상군경 등의 자격이 추가로 있는 경우, 보훈청에서 유족 승계 가능 하므로 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 (승계 전까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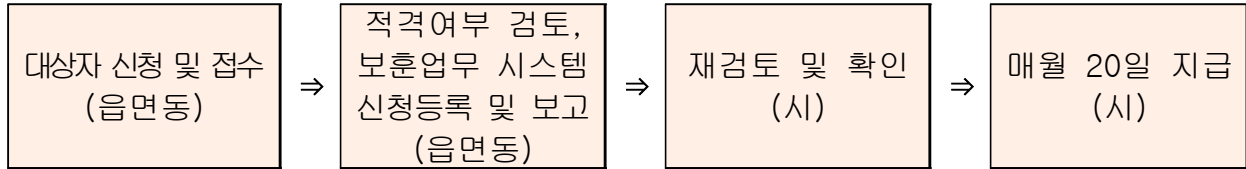
※ 추가적인 자격이 없는 참전유공자 단일자격인 자가 사망한 경우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안내

4

사업 세부사항

- 지급방법 : 신청에 의한 지급

- 지급절차



- 지급일 :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(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
- 지급기간 :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(사망 또는 전출한 달까지)

※ 예시) 2026년 1월 1일 신청, 3월 31일 사망 → 3개월분(1월~3월) 지급

2026년 2월 28일 전입, 3월 1일 관외전출 → 2개월분(2월~3월) 지급

- 신청접수 보고방법

- 서울행정시스템 보훈업무 신청등록관리에서 자격유효여부 및 주소지 확인 후 등록([붙임2 서울행정시스템 보훈업무 사용자매뉴얼 참고](#))
- 보훈수당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공문과 함께 스캔·첨부하여 해당 신청자 보고 서식([붙임4](#))과 함께 제출(원본 읍면동 보관)
- 사망위로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공문과 함께 스캔·첨부하여 해당 신청자 보고 서식([붙임5](#))과 함께 제출(원본 시청 제출)

- 신청 시 제출서류

-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
 - 지급신청서 1부(또는 대리수령 신청서*)
 -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 확인서 1부
 - ※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 확인서 : 보훈청 FAX민원 신청
 - 통장 사본 1부

*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(유족) 본인 신청(또는 수령)이 불가능한 경우, 대리수령 신청서([붙임](#)) 및 관련서류 제출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
-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
- 차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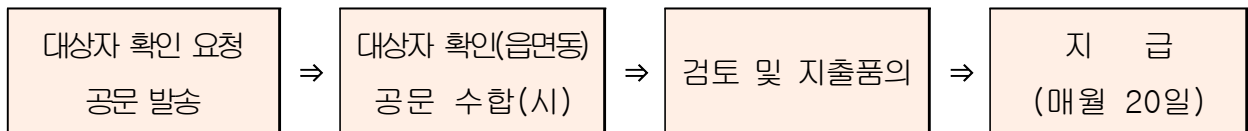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, 사망위로금
 - 지급신청서 1부
 - 사망 확인 서류(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) 1부
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 확인서 1부
 - ※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 확인서 : 보훈청 FAX민원 신청
 - 통장 사본 1부

● 기타사항

- **붙임3 신청서식**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전출입 및 사망처리 시 보훈대상자 즉시확인 및 신청 안내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와 협조체계 구축
(주민등록 전출입 및 사망 처리 시 국가유공자 확인될 경우 보훈 담당자 알림 必)
- 보훈수당은 복지급여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**복지급여 압류방지통장은 입금계좌로 지정 불가**함(신청접수 및 계좌변경 신청 시 확인 요망)

5 행정사항

● 보훈수당 월별 확인조사 시행 철저



- 조사결과 변동사항은 수합하여 매월 기한 엄수하여 시에 일괄 보고
 - 월별 확인조사 시 사망자 확인될 경우 즉시 보고 및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
 - 사망자 및 사망의심자의 경우 한번 누락된 경우 계속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월 조사 시 재확인
 -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,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보고
- 전입 보훈대상자 관리(붙임2 새울행정시스템 보훈업무 사용자매뉴얼 참고)
 - 새울행정시스템 보훈업무 ‘전입보훈대상자관리’에서 전입한 보훈대상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안내·처리
 - 신규신청 시 ‘신청등록관리’에서 등록

국가보훈수당 지급 제외자-지원보상대상자

구.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(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보상) 제1항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에 해당하는 자(예.지원공상군경)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서,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수행 중 부상이 인정되어 보훈청의 예우를 받는 대상자임.

2011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지원공상군경을 포함하는 제73조2는 삭제되었으나 기 지원대상자는 부칙 제19조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어 이전과 같이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으나, 국가유공자는 아님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【부 칙】 제19조(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(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)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